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영구보

호외 제586호 2021. 1. 1.(금)

규칙 · 훈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1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14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2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33

회 람								
--------	--	--	--	--	--	--	--	--

· 발행 : 수 영 구

· 편집 : 기획감사실 (610-407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행정과”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세부분장사무표 중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드론산업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중 창조도시교육추진단 분장사무 제3호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뉴딜사업, 다복동패키지)”를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뉴딜사업)”으로, 제15호 “그 밖의 시(市)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 추진”을 “그 밖의 시(市)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사업 추진”으로, 제19호 “평생학습센터 관리 및 운영·지원”을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같은 표 중 세무1과 분장사무 제16호를 삭제한다.

같은 표 중 복지정책과 분장사무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0.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도·감독 등)

같은 표 중 가족행복과 분장사무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0.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도·감독 등)

같은 표 중 일자리경제과 분장사무 제9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총괄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는 설치장소별 업무소관부서에서 수행”을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로 한다

같은 표 중 안전관리과 분장사무 제29호부터 제33호까지 및 제35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92호부터 제10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2. 오수펌프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93. 가로등(육교등,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
- 94. 지하도 기전설비 유지관리
- 95. 도로기전 시설물의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96. 그 밖의 영조물의 기전설비 유지에 관한 사항
- 97. 전기사업(법)관련 전기사업자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권한

- 98.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및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관련 업무
- 99. 망미고가도로 아래 휴식시설물 및 조형물 유지관리
 - 분수가동 및 운영, 기계·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 공급수 교체 및 내부 청소
- 100. 도서관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101. 전기용품에 관한 사항(과태료 부과·징수, 개선·과기·수거명령 등)
- 102. 우수저류시설(수영지구) 가동 및 운영(유량계, 수위계, 펌프 등)
- 103.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도서관 소관 공공청사 전기·소방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 1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총괄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는 설치장소별 업무소관부서에서 수행
- 105.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생활방사선 포함)

같은 표 중 건축과에 분장사무 중 제24호 및 제4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5호 “건축과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를 “건축과 소관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로 하며, 제60호 및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0.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
- 61. 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도·감독 등)

같은 표 중 건설과 분장사무 제68호를 삭제하고, 제85호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 업무”로 한다.

같은 표 중 도시관리과 분장사무 제23호부터 제34호까지 각각 삭제하고,
제35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불시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관한 사항
36. 사회복지무요원 복무 등 총괄관리
37. 민방위 계획 수립
38. 전시 동원자원에 관한 사항
39.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0. 민방위 준비에 관한 사항
41. 비상대책 업무
42. 민방위의 날 훈련 세부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43. 민방위경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44. 민방위 일반사항
45.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46.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
47. 민방위 사태에 관한 사항
48. 핵 및 화생방전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중 보건소 보건행정과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산 운용 및 전도금 관리
2. 의료장비 및 차량 관리

3. 일반환자 진료
4. 한센병, 성병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6.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7. 기생충 관리
8. 보건진료소의 지도·감독
9. 감염병예방 및 관리
10. 감염병의 역학조사
11. 신종감염병 및 급성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2. 만성 감염병에 관한 사항
13. 생물테러감염병 관련업무 처리
14. 지역보건에 관한 사항
15. 국가필수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16. 감염병 예방접종 지도, 계몽 및 교육
17. 방역대책 및 수립 시행
18. 위생해충 구제, 방역약품 및 기재관리
19. 의료법에 의한 허가, 개설신고 처리 및 지도
20. 약사법에 의한 등록, 신고, 처리 및 지도
21. 의료기기법에 의한 신고 처리 및 지도
22. 의료유사업 신고, 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신고 처리 및 지도

24.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 고발
25. 식중독에 관한 사항
26.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27. 법정감염병 및 신종질환검사에 관한 사항
28.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결핵·성병·기생충 검사에 관한 사항
30. 각종 임상병리검사 (진료, 검진, 음용수 검사 등과 관련한 검체검사)
31. 의료보험·의료보호·1차진료의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32. 엑스레이 촬영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각종 검사 및 검진에 관한 사항
3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
36. 헌혈권장사업에 관한 사항
3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38.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9. 의료법인에 관한 사항
40.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에 관한 사항
4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신고, 지도에 관한 사항
42. 시설의 운영 및 관리(기전시설 포함)
43.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4. 화장품법에 의한 지도

45. 재난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표 중 보건소 건강증진과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2.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5.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방문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9.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10.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지원
11. 통합건강증진사업
12.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13. 국민 영양 실태조사 및 연구
14. 주민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
15.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산후조리원의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
17. 그 밖에 모자보건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사업에 관한 사항

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1. 임신부 및 영유아 등록, 건강관리
22. 영양플러스 사업 전반
23. 마을건강센터 운영 전반
24.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간호, 재가암 환자관리 등) 운영 전반
25. 호스피스 사업 운영 전반
26. 국가 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7. 성인·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8.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29.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30.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사업
31. 치매치료관리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2. 치매예방관리 및 인식개선사업
33.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4.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및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5. 정신재활시설 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별 담당사무를 명확히 조정·분장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설·폐지 사무 정비 등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보건소장 밑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함(제8조)
- 나. 계 이동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제11조 별표 2)
- 안전관리과의 민방위계 업무를 도시관리과로 이관
 - 도시관리과의 기전계 업무를 안전관리과로 이관
- 다. 신설업무 분장 및 부서별 사무분장의 명확화·현행화(제11조 별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간의 계 이동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사무의 전결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설·조정되는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계 이동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전결사무를 조정함(별표 1)
- 안전관리과의 민방위계 업무를 도시관리과로 이관
 - 도시관리과의 기전계 업무를 안전관리과로 이관
- 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신규사무 반영, 사무명 및 용어 수정 등 정비
(별표 1, 별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 조건)”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중 “승진임용순위명부는”을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 의사, 징병전담 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의 제목 “(자격증 등의 가산점)”을 “(가산점 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5와 같고, 해당 직렬·직류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

④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7과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8과 같고,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반영비율 및 반영기간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을 따른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을 “인사운영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발탁 임용”을 “충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 공무원을 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29조 중 “계속”을 “성실하게”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8, 별표 9,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의2, 별표7의2, 별표1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7부터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함.

◆ 주요내용

- 가. 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 가산폐지 (제14조, 별표7의2 삭제)
- 나. 지방방호직렬 신체검사 조항 삭제(제16조, 별표4의2)
- 다. 상위규정에서 정한 단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전직시험 방법 및 자격규정 조항 삭제 (제19조제5항 및 제6항)
- 라.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서식 신설(제23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 마. 연구직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방법 개선(제24조)
- 바. 연구·지도직 공무원과 다른 일반직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관련 조항 신설 (제24조의2)
- 사. 자격증 가산점 부여 정비(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아. 근무경력 및 실적 가산점 관련 규정 신설 (제26조제4항~5항, 별표 17~18)
- 자. 직렬·직류 통·폐합 및 국가기술 자격 변경 사항에 따른 관련 별표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회원가입 신청서”를 “회원가입 및 이용료 감면 신청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및 이용료 감면 신청서”로 한다.

제6조 중 “이용·이용승인”을 “이용신청·승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회원가입 및 이용료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 회원가입 신청 [] 이용료 감면 신청						
프로그램명				수강시간(요일/시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연락처	휴대폰:		자택/직장:			
감면율	감면사유					
입금계좌	계좌번호(금융기관명):			예금주:		
<p><고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실 또는 안내실에 맡기신 귀중품 이외 분실물은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용일을 포함하여 이후에 신청하신 환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전액 환급은 불가합니다. ◦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각종 신체상·재산상의 피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합니다. ◦ 이용료 감면 신청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및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p><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환(뇌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으신 분은 회원가입 및 이용 전에 공공체육시설 관계자와 반드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p><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뒷면의 이용료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신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가입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서명)</p> <p>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p>						

◆ 제안이유

공공체육시설의 실제 운영에 맞춰 규칙을 정비함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통합에 따른 문구 정비(제3조, 제4조)

나. 실제 이용 방식에 따른 문구 수정(제6조)

다. 회원가입 및 이용료 감면 신청서식 통합, 이용료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추가(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3조제1항 중 “5명 이내로”를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수영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소속된 사람
-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6조의 제목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본문 중 “위원이”를 “구청장은 위원이”로 하고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2항 단서 부분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을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위원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7조제3항 관련)

1.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p><input type="checkbox"/>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p> <p>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1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 이상 18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3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일 이상 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p style="text-align: center;">※ 위 감점기준은 지정 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p>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을 받은 자가 포함된 경우 :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을 받은 자가 포함된 경우 : 감점 10점 </div> <p><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2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3점 △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div>	40점 (미감점시)
	<p><input type="checkbox"/>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3년이상 : 10점, 3년미만~1년이상 : 5점, 1년미만 : 0점)</p>	10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p><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p>	10점
	<p><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p>	
<p><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p>		

<p>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p>	<p>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p>	
	<p><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p>	<p>10점</p>
	<p><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p>	
<p><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p>		
<p>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p>	<p>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p>	
	<p><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p>	<p>10점</p>
	<p><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 제도 운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고충처리절차,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 등)이 마련되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p>	
<p><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p>		
<p>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항목 (15점)</p>	<p><input type="checkbox"/>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 : 15점</p> <p><input type="checkbox"/> 방문목욕차량 보유(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제공), 방문간호 : 10점</p> <p><input type="checkbox"/>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 5점</p> <p>※ 2개 이상 급여종류 해당 시 상위점수 부여</p>	<p>15점</p>
<p>서비스 중복 방지 항목(5점)</p>	<p><input type="checkbox"/> 동일건물 동일 층수에 중복서비스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p>	<p>5점</p>
<p>※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p>		

2.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항목	세부 기준	배점
<p>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p>	<p>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p> <p><input type="checkbox"/>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p> <p>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 이상 180일 미만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일 이상 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p>※ 위 감점기준은 지정 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p>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을 받은 자가 포함된 경우 :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을 받은 자가 포함된 경우 : 감점 10점 </div>	<p>50점 (미감점시)</p>
	<p><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2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3점 △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div>	
<p>서비스 제공, 자원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 (30점)</p>	<p>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p>	<p>30점</p>
	<p><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이용편의를 위한 정보제공계획, 상담계획, 고충처리 계획 마련여부</p>	
	<p><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절차 투명성 확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4대보험, 퇴직급여 등 직원채용 및 운영계획이 적정한지 여부</p>	
<p>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항목 (15점)</p>	<p><input type="checkbox"/> 복지용구 관리계획(소독), 전시 및 체험공간 면적, 건축물 용도 등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p>	<p>15점</p>
<p>서비스 중핵심지 항목 (5점)</p>	<p><input type="checkbox"/> 동일 건물에 동일서비스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p>	<p>5점</p>
<p>※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p>		

◆ 제안이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복지용구 지정 심사기준을 추가하여 규칙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제3조)
- 나. 위원의 제척 사유 정비 및 위촉 해제 사유 추가(제5조, 제6조)
- 다. 서면심의 개최 사유 구체화 및 위원회 운영 사항 정비(제7조)
- 라.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심사기준표 추가 (별표 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부서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본청 부서별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구분청 과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합계		433	
기획감사실	5급	1	행정직1
	6급	12	행정직10, 세무직1, 기계운영직1
	7급	10	행정직8, 사회복지직1, 시설직1
	8급	6	행정직6
	9급	2	행정직1, 행정·전산·방송통신1
	소계	31	
창조도시 교육추진단	5급	1	행정직1
	6급	6	행정직5, 시설직1
	7급	4	행정직2, 시설직2
	8급	1	행정직1
	9급	2	행정직2
	소계	14	
총 무 과	정무직	1	정무직1(구청장)
	3급	1	행정직1
	4급	1	행정직1
	5급	1	행정직1
	6급	9	행정직7, 전산직1, 운전직1
	7급	11	행정직7, 전산직2, 운전직2
	8급	8	행정직5, 전산직3,
	9급	1	행정직1
	별정직	2	6급상당1(행정·별정직), 8급상당1
	소계	35	
문화관광과	5급	1	행정직1
	6급	7	행정직7
	7급	8	행정직8
	8급	2	행정직2
	9급	2	행정직2
	소계	20	

구분청 과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재무과	5급	1	행정직1
	6급	5	행정직4, 방송통신직1
	7급	4	행정직2, 방송통신직2
	8급	5	행정직2, 방송통신직1, 공업직1, 기계운영직1
	9급	2	행정직1, 방송통신직1
	소계	17	
세무1과	5급	1	행정직1
	6급	8	세무직8
	7급	6	세무직6
	8급	4	세무직4
	9급	1	세무직1
	소계	20	
세무2과	5급	1	행정직1
	6급	9	세무직6, 행정·세무직 3
	7급	5	세무직5
	8급	4	세무직4
	9급	1	세무직1
	소계	20	
민원여권과	5급	1	행정직1
	6급	5	행정직5
	7급	5	행정직5
	8급	4	행정직4
	9급	3	행정직2, 운전직 1
	소계	18	
복지정책과	4급	1	행정직1
	5급	1	행정직1
	6급	6	행정직3, 사회복지직3
	7급	11	행정직4, 사회복지직7
	8급	3	행정직2, 사회복지직1
	9급	4	행정직4
	소계	26	

구분칭 과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가족행복과	5급	1	행정·사회복지직1
	6급	6	행정직5, 행정·사회복지직1
	7급	7	행정직5, 사회복지직2
	8급	5	행정직2, 사회복지직3
	9급	2	행정직2
	소계	21	
기초생활 보장과	5급	1	행정·사회복지직1
	6급	6	행정직2, 행정·사회복지직1, 사회복지직3
	7급	7	행정직1, 사회복지직6
	8급	5	행정직2, 사회복지직3
	9급	3	행정직3
	소계	22	
자원순환과	5급	1	행정직1
	6급	6	행정직4, 행정·공업·환경직1, 운전직1
	7급	6	행정직5, 공업직1
	8급	3	행정직2, 공업직1
	9급	2	행정직1, 공업직1
	소계	18	
환경위생과	5급	1	행정·보건·식품위생·환경직1
	6급	5	행정직2, 행정·보건직1, 행정·보건·식품위생직1, 환경직1
	7급	7	행정직1, 식품위생직2, 보건직1, 환경·보건·공업직1, 환경직2
	8급	4	행정·환경직1, 환경·공업직1, 보건직1, 식품위생직1
	9급	3	식품위생직1, 환경직2
	소계	20	
일자리경제과	5급	1	행정·농업·녹지직1
	6급	7	행정직4, 행정·공업직1, 행정·해양수산·농업직1, 녹지직1
	7급	9	행정직2, 행정·수의·농업직1 , 녹지직2, 해양수산직1, 운전직1, 선박기관운영직1, 사무운영직1
	8급	7	행정직2, 공업직2, 녹지직2, 해양수산직1
	9급	1	행정직1
	소계	25	

구분청 과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안전관리과	4급	1	기술직1
	5급	1	행정직1
	6급	6	행정직3 , 행정·시설직1, 행정·방송통신직1, 공업직1
	7급	7	행정직1 , 시설직2, 방송통신직1, 공업직2 , 운전직1
	8급	5	행정직1, 행정·방송통신직1, 방재안전직1 , 공업직2
	9급	2	방송통신직1, 방재안전직1
	소계	22	
교통행정과	5급	1	행정직1
	6급	7	행정직5, 행정·공업직1, 행정·세무직1
	7급	8	행정직6, 세무직1, 운전직1
	8급	3	행정직1, 공업직1, 운전직1
	9급	2	행정직1, 시설직1
	소계	21	
건축과	5급	1	시설직1
	6급	5	행정직2, 시설직3
	7급	3	시설직2, 공업직1
	8급	9	행정직2, 시설직7
	9급	3	행정직2 , 시설직1
	소계	21	
건설과	5급	1	시설직1
	6급	5	행정직2, 시설직3
	7급	6	행정직1, 시설직5
	8급	6	행정직1, 시설직5
	9급	1	시설직1
	소계	19	
토지정보과	5급	1	시설직1
	6급	5	행정직3, 시설직1, 행정·시설직1
	7급	5	행정직3, 시설직2
	8급	4	시설직4
	9급	3	시설직3
	소계	18	
도시관리과	5급	1	행정·시설직1
	6급	4	행정직4
	7급	6	행정직6
	8급	5	행정직3 , 운전직2
	9급	9	행정직9
	소계	25	

[별표 3]

보건소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보건소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보건행정과	4급	1	기술직1
	5급	3	의무직2,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직1
	6급	4	행정직1, 보건·의료기술·간호직2,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직1
	7급	9	행정직1, 간호직2, 약무직1, 보건직1, 의료기술직3, 운전직1
	8급	6	행정직1, 간호직1, 보건직1, 의료기술직1, 보건·간호직1, 공업직1
	9급	5	행정직1, 운전직1, 보건직3
	소계	28	
건강증진과	5급	2	의무직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직1
	6급	3	보건·의료기술·간호직3
	7급	5	간호직4, 보건직1
	8급	17	행정·보건직1, 간호직15, 보건직1
	9급	1	보건직1
		소계	28

[별표 4]

도서관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사업소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도서관	6급	2	행정직1, 사서직1
	7급	4	행정직1, 사서직3
	8급	7	행정직2, 사서직3, 전산직1, 공업직1
	9급	5	행정직1, 사서직4
		소계	18

[별표 5]

동별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동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합계		132	
남천1동	5급	1	행정직1
	6급	2	행정·세무직1, 사회복지직1
	7급	3	행정직2, 사회복지직1
	8급	4	행정직2, 사회복지직2
	9급	2	행정직1, 사회복지직1
	소계	12	
남천2동	5급	1	행정직1
	6급	2	행정·세무직1, 행정·사회복지직1
	7급	3	행정직2, 사회복지직1
	8급	3	행정직1, 사회복지직2
	9급	2	행정직1, 사회복지직1
	소계	11	
수영동	5급	1	행정·사회복지직1
	6급	2	행정직1, 행정·사회복지직1
	7급	3	행정직1, 사회복지직2
	8급	4	행정직3, 사회복지직1
	9급	3	행정직1, 사회복지직2
	소계	13	
망미1동	5급	1	행정·사회복지직1
	6급	2	행정직1, 사회복지직1
	7급	5	행정직2, 사회복지직3
	8급	6	행정직4, 사회복지직2
	9급	2	행정직1, 사회복지직1
	소계	16	
망미2동	5급	1	행정직1
	6급	2	행정직1, 사회복지직1
	7급	2	행정직1, 사회복지직1
	8급	4	행정직2, 사회복지직2
	9급	4	행정직2, 사회복지직2
	소계	13	

동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광안1동	5급	1	행정·사회복지직1
	6급	2	행정직1, 사회복지직1
	7급	3	행정직1, 사회복지직2
	8급	5	행정직3, 사회복지직2
	9급	4	행정직2, 사회복지직2
	소계	15	
광안2동	5급	1	행정·사회복지직1
	6급	2	행정직1, 행정·사회복지직1
	7급	3	행정직1, 사회복지직2
	8급	5	행정직3, 사회복지직2
	9급	2	행정직1, 사회복지직1
	소계	13	
광안3동	5급	1	행정직1
	6급	2	행정·세무직1, 행정·사회복지직1
	7급	2	행정직1, 사회복지직1
	8급	4	행정직2, 사회복지직2
	9급	2	행정직1, 사회복지직1
	소계	11	
광안4동	5급	1	행정직1
	6급	2	행정직1, 행정·사회복지직1
	7급	3	행정직1, 사회복지직2
	8급	4	행정직3, 사회복지직1
	9급	3	행정직1, 사회복지직2
	소계	13	
민락동	5급	1	행정·사회복지직1
	6급	2	행정직1, 사회복지직1
	7급	4	행정직2, 사회복지직2
	8급	4	행정직2, 사회복지직2
	9급	4	행정직2, 사회복지직2
	소계	15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사항에 맞게 정원관리 기관별·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별표의 부서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사항을 개정

구 분	기구 및 정 원		증감	증 감 내 용	
	조정전	조정후		증	감
총 계	638	651	증 13		
본청 계	429	433	증 4		
기획감사실	30	31	증 1	행정9급 1	
창조도시교육 추진단	14	14			
총 무 과	35	35			
문화관광과	20	20		행정6급 1, 행정8급 1	공업·방송통신8급 1, 행정9급 1
재무과	17	17			
세무1과	20	20			
세무2과	20	20			
민원여권과	18	18			
복지정책과	26	26		사회복지7급 3	사회복지9급 3
가족행복과	21	21			
기초생활보장과	22	22		사회복지6급 1	사회복지9급 1
자원순환과	18	18		공업9급 1	공업7급 1
환경위생과	20	20			
일자리경제과	25	25		행정·수의·농업7급 1	행정·수의7급 1
안전관리과	19	22	증 3	공업6급 1, 공업7급 2, 공업8급 2 운전7급 1, 방재안전직 8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행정·방재안전8급 1, 행정·방송통신9급 1
교통행정과	21	21			
건 축 과	19	21	증 2	공업7급 1, 행정9급 1	
건 설 과	19	19			
토지정보과	18	18			
도시관리과	27	25	감 2	행정6급 1, 행정7급 1, 행정8급 1, 행정9급 1	공업6급 1, 공업7급 2, 공업8급 2, 운전7급 1
의회사무과	12	12	-		
보 건 소	51	56	증 5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5급 1 의무5급 1, 보건·의료기술·간호6급 1, 간호8급 1, 보건9급 1	
도 서 관	14	18	증 4	사서7급 1, 사서9급 3	
동	132	132	-		
망미1	16	16		사회복지7급 1	사회복지9급 1